

동아리연합회 회칙

제정 : 1990. 11. 28.

최종개정 : 2019. 06. 01.

제 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서울예술대학교 동아리연합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 ① 본회는 서울예술대학교 동아리들의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학생 자치 활동을 통하여 서울예술대학교 동아리들의 효율적인 활동을 지원한다.
- ② 본회는 소속 동아리들의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고 예술 학도로서의 창조적 본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서울예술대학교 내의 학생자치기구로서 동아리연합회를 둔다. 또한 연합회의 활동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희생, 봉사 정신을 전제로 한 동아리연합회 산하의 조직으로 동아리연합회 집행부를 둔다.

제4조(회원)

- ① 본회의 회원은 등록된 동아리의 전 회원으로 한다.
- ② 신규 동아리 및 기존 동아리는 매년 4월 동아리 연합회 집행부의 심의를 통해 동아리 대표자 회의의 승인을 얻어 준동아리 및 정동아리의 자격을 취득한다.
(등록요건은 '제 5장 동아리 등록 기준'에 따름)

제5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 ① 본회의 회원은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 ② 본회의 회원은 회칙 준수의 의무를 갖는다.

제6조(기능) 본회는 회칙 제2조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 ① 동아리 활동에 관한 지원과 사무 일체
- ② 동아리 복지에 관한 지원과 사무 일체
- ③ 동아리들의 대외적 활동에 관한 지원과 사무 일체

제 2장 기구, 임원, 기능

제1절 동아리 대표자 회의

제7조(지위 및 구성)

- ① 총회 대표자 회의는 본회의 최고 심의, 의결 기구로써, 동아리연합회장단, 집행부, 정동아리의 각 대표로 구성한다.
- ② 정동아리의 대표자는 각 동아리의 회칙에 준한 회장으로 하며, 회장 부재 시는 각 동아리에서 책임 있는 대표자를 대리 임명하여 동등한 권리를 행사하도록 한다.

제8조(기능) 동아리 대표자 회의는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의장) 동아리 대표자 회의 의장은 동아리연합회장이 된다.

제10조(소집)

- ① 정기회의는 매월 1회를 원칙으로 한다.
- ② 임시회의는 동아리연합회 회장의 발의 및 대표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장단이 소집할 수 있다.
- ③ 회의 소집은 소집 이유를 명시하여 3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

- ① 재적 대표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 대표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② 특별안건은 재적 대표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 대표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특별안건은 동아리 연합회 회장과 집행부 탄핵권, 동아리 징계권, 회칙 개정의 내용을 말한다.
- ③ 정기 회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동아리 대표자 회의가 무산되었다고 보며, 2회 이상 무산되었을 시에는 집행부에 권한을 위임한다.

제12조(권한)

- ① 동아리연합회 회장 선출
- ② 집행부의 사업계획 동의
- ③ 회칙 개정안 발의 및 심의, 의결
- ④ 동아리에 대한 징계 회부
- ⑤ 본회 회장단 및 집행부서에 대한 불신임
- ⑥ 동아리의 자치활동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특별위원회' 설치 요구

제 2절 동아리 연합회 회장단

제13조(지위)

- ① 동아리연합회장은 학교 내외로 본 회를 대표하여 동아리 대표자 회의의 장, 집행부의 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동아리연합 회장을 보좌하여 동아리연합회장 궐위 시에는 그 직위를 승계한다.
- ③ 동아리연합회는 본 회원의 자율적인 학술활동과 학생활동을 보장해야 할 책임과 본 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학생대표로서 학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④ 동아리연합회장은 교내 게시관 내 동아리관련 게시물을 게재 및 보존, 게재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제14조(임기)

- ① 동아리연합회장단의 임기는 12월 1일부터 익년 11월 30일까지 한다.
- ② 당선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 인수인계기간으로 한다.
- ③ 당선인은 인수인계를 위하여 인수인계사항을 정리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 ④ 인수인계를 성실히 하지 아니할 시에는 동아리연합회의 지급된 활동비 전액을 회수하여 동아리연합회 예산으로 귀속한다.

제15조(선출) 동아리연합회장의 선출은 대의원이 참석한 동아리연합회 대표자 회의를 통해, 정동아리의 대표자들이 직접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선거권은 정동아리의 대표자들에게 한한다.

제16조(업무 및 권한) 동아리연합회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 ① 동아리연합회 부회장과 집행부의 각 부서장을 대의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 ② 학생총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한다.
- ③ 동아리연합회 집행부 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주관한다.
- ④ 본 회의 전체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 및 결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회의에 제

출한다.

- ⑤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⑥ 기타 동아리연합회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 ⑦ 동아리 활동에 관한 조정 지원 등의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⑧ 동아리연합회는 각 동아리의 자율적 활동을 위해 본 회칙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칙과 조 직을 가질 수 있다.
- ⑨ 동아리연합회 집행부의 구성은 절차에 따라 발의를 통해 개편이 가능하다.

제 3절 동아리연합회 집행부

제17조(지위 및 구성) 집행부는 본 회의 집행기구로써, 동아리연합회장단 및 각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제18조(임기) 집행부 임원의 임기는 동아리연합회장 임기에 준한다.

제19조(업무 및 권한) 집행부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 ① 집행부의 운영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 및 대의원총회에 제출한다.
- ② 집행부의 사업보고서 및 결산 보고서를 운영위원회 및 대의원총회에 제출한다.
- ③ 집행부는 제반 활동의 집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 총무부 : 본 회의 사무, 회계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기획부 : 본 회의 행사 및 운영의 기획 총괄 업무를 담당한다.
 - 복지부 : 본 회 회원의 편의시설 및 후생복지 및 학생복지위원회 전반 업무 담당한다.
 - 홍보부 : 본 회의 대내외적 홍보 및 섭외에 전반 업무 담당한다.
 - 대외협력부 : 본 회의 제휴기업 및 제휴 학생회 등 제휴업무의 전반적인 업무 담당한다.
- ④ 동아리연합회는 매해 1년간 우수한 활동을 선보인 동아리를 선정할 자격을 갖는다.

제20조(자치내규) 동아리연합회의 자율적 활동을 위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아리연합회의 자치내규에 따른다.

제 3장 선 거

제21조(출마자격)

- ① 본 회의 회장은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동아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는 동아리 회 원으로 한다.
- ② 본 회의 회장은 동아리 회원 50인 이상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9.06.01.>.

제22조(임기) 임기는 1년이고, 재임할 수 없다.

제23조(선거절차)

- ① 선거일은 매년 2학기 말 대의원이 참석한 정기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한다.
- ② 선거관리 위원회는 현 집행부서로 하고 위원장은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한다.
- ③ 선거관리 위원회는 선거를 지휘 감독하며 해당년도 선거관리 시행 세칙을 선거일로부터 20일 이전 에 공고한다.

제 4장 재 정

제24조(경비)

- ① 본회의 경비는 학생이 납부한 학생회비로 한다.
- ② 필요시, 교학처에 교비를 신청, 지원받아 운영한다.

제25조(운영활동비) 동아리연합회장단과 집행부는 동아리활동운영에 있어 필요한 운영활동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제 5장 동아리 등록

제 1절 등록기준

제26조(등록여건)

- ① 소속 단체의 설립 목적과 취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10개 학과 이상, 20명 이상의 입회원서를 제출한 정규 회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② 단체의 설립 목적이 기존 단체와 중복되지 않고 고유한 특성을 지녀야 한다.
- ③ 활동 내용이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 ④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동아리연합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 등록승인원 1부
 - Ⓑ 회원 명단 및 회칙 1부
 - Ⓒ 전년도 및 해당년도 활동 실적(결과), 내년 연간 활동 계획서 1부
 - Ⓓ 지도교수 취임 승낙서 1부

제27조(등록취소)

- ① 등록원 및 재 등록원을 등록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동아리
- ②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은 동아리
- ③ 징계 결정에 의하여 제명된 동아리
- ④ 기타 동아리 자격에 미달 된다고 집행부 회의에서 판정받았을 때, 동아리 연합회 회장의 권한으로 등록을 취소한다.

제 2절 우수동아리 선정

제28조(목적) 매해 1년간 우수한 활동을 선보인 동아리를 선정하여 동아리들의 건전한 활동을 장려하는 것에 의의를 둔다.

제29조(후보)

- ① 학생단체로 정식 등록된 동아리로 그 후보를 제한한다.
- ② 각 호의 구비서류를 신청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동아리는 선정 후보에서 제외한다.
 - Ⓐ 우수동아리 지원 신청서 1부
 - Ⓑ 선정 공고 일자 기준 회원 명단 1부
 - Ⓒ 전년도 및 해당년도 활동 실적(결과) 보고서, 내년 연간 활동 계획서 1부
 - Ⓓ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사진 자료 및 팸플릿 등 1부

㉔ 지도교수의 자체 평가서 1부

제30조(평가 및 선정)

- ① 동아리연합회는 매해 1년간 우수한 활동을 선보인 동아리를 선정할 자격을 갖는다.
- ② 동아리연합회 단독적 선정이 아닌 교학운영처와 총학생회와 함께 규격화 된 공정한 평가표에 준하여 평가 및 선정한다.
- ③ 평가 점수를 환산하여 종합점수 상위 순으로 우수동아리를 선정한다.
- ④ 각종 공식적인 학교 행사 또는 학생자치기구 행사, 동아리 개별 워크숍 등에 적극 참여한 동아리를 선정하여 지원한다.

제31조(지원 및 포상)

- ① 우수동아리로 선정된 동아리는 계획에 의한 금액을 상장과 함께 포상하며, 포상 시기는 12월 중 별도 시상 계획에 의거하여 수상한다.

제 6 장 징 계

제32조(징계) 본회의 목적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배된 행위를 한 동아리는 본 회의에서 징계 할 수 있다.

제33조(징계대상)

- ① 교내 시설물과 교내 기자재 대여, 사용, 반납함에 있어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동아리
- ② 해당 시설물과 기자재의 사용 중 파손, 훼손 및 분실을 한 동아리
- ③ 신체적 가해행위, 문자·언어적 가해행위를 한 동아리<신설 2019.06.01.>.
- ④ 성폭행, 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되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되는 행위를 한 동아리 <신설 2019.06.01.>.

제34조(징계절차) 신고 및 적발이 된 동아리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35조(징계위원회)

- ① 징계위원회 회의 의장은 동아리연합회장이 된다.
-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 전반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심의, 공고한다.
- ③ 징계위원회는 동아리 연합회 지도 교수, 징계 대상 동아리 지도 교수, 동아리연합회장단, 해당 동아리의 대표로 구성한다.

제36조(소집) 징계 위원회 소집은 소집 이유와 징계 대상자를 명시하여 3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7조(징계처분) 징계 처분은 위반 행위의 심각성, 재발 정도 등을 참고하여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① 1회 징계 시 학교 내·외부 행사 참여 금지(징계 후 1년 동안)<신설 2019.06.01.>.
- ② 2회 징계 시 신입 회원 모집 정지(징계 후 1년 동안)<신설 2019.06.01.>.
- ③ 3회 징계 시 동아리 영구 폐지(단, 횟수는 1회 징계 이후 3년 동안 유효하며, 징계는 '동아리 내 공식적인 행사에서 사건 발생시'로 한정 한다.)<신설 2019.06.01.>.

제 7 장 동아리연합회 소속 동아리

제38조(동아리 대표자 선출) 각 동아리의 대표자 선출은 동아리 별 회칙에 의거하여 동아리 구성원들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제39조(동아리 재정 운영)

- ① 각 동아리의 운영은 동아리활동운영에 있어 필요한 운영활동비를 동아리 구성원들의 의해 자체적으로 자급한다.
- ② 각 동아리의 운영활동비 내역은 규정된 양식에 따라 기록, 관리되어야 하며 동아리 구성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③ 공금 횡령 등 부정부패가 발생할 경우 동아리연합회 및 대의원에서 해당 동아리에 운영활동비 내역에 대한 재무 감사를 실시한다.

부칙

1. (시행일)이 회칙은 1990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이 회칙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